



수정 공고
2010년 10월 6일

Joel I. Klein
교육감

교육감 규정

번호: A-190

제목: 학교 사용 및 1 개 이상의 학교가 입주한 학교 건물 관리 절차에 대한 중요한 변경

* 학습 발자취(Instructional Footprint) 개정본을 주요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chools.nyc.gov/community/planning>. 또한 새로운 형식의 교육감 규정서 A-190의 개정안을 다음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chools.nyc.gov/AboutUs/leadership/PEP/publicnotice/A190Reg_Oct2010. 새로운 형식의 문서에는 변경된 머리글, 페이지 구성, 철자법 수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개정안 내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I. 검토중인 제안 안건의 주제,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설명과 안건에 대한 모든 주요 개정 조항 설명

학교 사용 및 1 개 이상의 학교가 입주한 학교 건물 관리 절차에 대한 중요한 변경에 대한 교육감 규정 A-190은 2009년 11월 13일자 규정서를 대체합니다. 학교 폐지 및 학교 사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합니다.

2010년 8월 23일 뉴욕시 교육청은 학교 사용에 대한 공지 및 참여와 발언의 기회 제공을 위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확대하며 현존하는 공립 학교에 1 개 이상의 차터스쿨의 위치 또는 공동위치와 관련해 따라야 할 절차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에 포함된 기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 학교 학군,”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CEC’) 및 “학교 사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명확해 졌습니다.; “자본적 개선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의 정의가 추가되었습니다; 교육 효과 성명서 (Educational Impact Statements: EIS) 가이드가 추가되었습니다; EIS 접수 요건을 설명하였으며 EIS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공지되고 사본을 PEP, 해당 CEC, 커뮤니티 위원회, 교육장, SLT 및 관련 있는 기타 단체에게 사본을 접수하여야 하며 사본을 해당 학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청 학교에 차터스쿨이 함께 위치한 모든 빌딩에서 필요한 빌딩 사용 계획 및 공유공간 계획 템플릿이 추가되었습니다; CCHS, CCSE 및 D75 위원회는 공동 심의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어야 하며 공동 공개 심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빌딩 위원회의 역할에 분쟁 해결 절차가 포함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공유공간 위원회에는 차터스쿨이 위치한 교육청 학교 건물에 위치한 각 학교의 학부모 및 교사 대표와 빌딩 위원회가 모두 포함되어 구성되도록 정의되었습니다; 교육청 건물에 차터스쿨을 수용하기 위한 5000 달러 이상의 자본적 개선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 이제 반드시 같은 건물에 모든 교육청 학교에도 같은 금액의 개선 또는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청 건물에 위치한 차터스쿨 공간에 대한 자본적 개선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때 반드시

차터스쿨이 교육감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설정되었습니다; 차터스쿨 공동 위치 및 빌딩 사용 계획을 교육 위원장 (Commissioner of Education)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권리가 추가되었습니다.

2010년 9월 3일 교육청은 새로운 머리글과 페이지 번호 및 철자 교정을 포함한 교육감 규정서 A-190 개정안의 새로운 버전을 발표했으며 제안된 규정서는 새로운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10년 9월 22일 교육청은 공공 의견을 반영하여 A-190 개정 제안의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정안은 “영향을 받는 학생” 및 “학교 사용의 중요한 변화”의 정의에 대해 실질적 및 비실질적 수정, EIS 접수 절차에 대한 수정, 공동 공청회 스케줄 및 공청회 의사 일정 개발을 위한 절차에 대한 수정, 교육감이 EIS를 수정할 경우에 필요한 절차 해명, 빌딩 위원회 및 공동 사용 공간 위원회 구성 수정, 자금 개선 및 시설 업그레이드 승인 과정과 관련된 절차 수정, “D75 프로그램”을 “D75 학교 조직”으로 수정 및 개정안의 공지 및/또는 공동 공청회 참석 초대를 받는 개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또한 교육청은 BUP 개정에 대한 파트 II 의(A)(2)(a)(iii)(a)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규정서의 다른 부분에는 수정된 항목이 없습니다.

II. 제안된 조항의 전체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정보.

제안된 조항에 대한 전체 내용은 아래 PEP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chools.nyc.gov/AboutUs/leadership/PEP/publicnotice/A190Reg_Oct2010

A-190 개정안에 관련되어 DOE에 접수된 구두 및 서면 의견의 분석은 본 규정서 개정안이 논의되는 교육정책 패널 회의가 실시되기 전 교육청 웹사이트에 게재됩니다.

III. 현재 검토 중인 개정 조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검토 중인 안건에 관해 문의를 하거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구두 또는 문서상으로 의견을 제출할 교육청 담당자 성명, 담당부서, 주소, 이메일 및 전화번호.

이름: Gentian Falstrom
사무실: Division of Portfolio Planning
주소: 52 Chambers Street
이메일: RegulationA-190@schools.nyc.gov
전화: (212) 374-2471

VI. 검토 중인 제안된 조항에 대해 투표할 위원회의 PEP 회의가 개최될 날짜, 시간 및 장소.

2010년 10월 7일
6:00 p.m.
New World High School
921 E. 228th Street
Bronx, NY